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별지와 같이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어음 또는 수표(이하 “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환어음이 인수된 경우에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_____는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의 이유가 어음금 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상당액을 예탁함에 있어 동 어음의 발행인을 요약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지급은행을 낙약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자를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본 약정서에서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의 당좌 (가계당좌)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가처분명령을 말한다.

제1조 고객은 금 _____원을 제3자를 위하여 은행에게 예탁하고 은행은 이를 제3자를 위하여 수탁한다.

제2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3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제1조의 예탁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다.

1. 제3자가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 제3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문을 제출한 경우.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객이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3자가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4. 고객이 제3자에 대한 어음금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동 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조의 예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1. 제3자가 제기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고객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 고객이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3. 당해어음채무로 인하여 고객이 제3자를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공탁해당금액. 다만, 고객이 당해어음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고객이 당해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